

의안번호	2203846
의 퇴 인	용혜인 의원
회 답 일	2024.10.7.
추 계 번호	24B3706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(적용 제외)제1항제2호	안 제10조제1항제2호 삭제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(적용 제외)제1항제2호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

2. 상세 사유

- 현행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제1항제2호¹⁾ 및 동법 시행령²⁾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(“초단시간 노동자”) 중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

1) 제10조(적용 제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2. 해당 사업에서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
 2) 제3조(적용 제외 근로자)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“해당 사업에서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”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.
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.
 1.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
 2. 일용근로자

- 개정안은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,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
[표 1]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적용 제외

현행법	개정안
제10조(적용 제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2. 해당 사업에서 소정(所定)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	제10조(적용 제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삭 제>

-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지만³⁾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해당 초단시간 노동자가 있을 경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됨
 - 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므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단시간 노동자 중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납부해야함
 -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‘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’에 ‘보험료율’을 곱하여 산출⁴⁾하므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“지원 대상자 수” 및 “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”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
- 그러나 현시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지원 대상자 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며, 해당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의 시행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중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됨에 따라 구직급여 및 모성보호급여 등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지출이

3) 제10조(적용 제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3. 「국가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(제4장에 한정한다)에 가입할 수 있다.

4)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제13조④ 제1항에 따라 **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(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)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**

1.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
2.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

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
곤란

- 참고로,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15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2023
년 기준 160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

[표 2] 15시간 미만 근로자 현황

(단위: 천명)

연도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근로자 수	904	960	1,095	1,302	1,304	1,512	1,577	1,600

자료: 통계청, 2024년 9월 11일 접속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
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
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
에 해당함

국회예산정책처	경제비용추계과
과	장 배아형
추계세제분석관	남 희
연 락 처	02-6788-3737
	nhee@nabo.go.kr
